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수당 지급 등〉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71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수당 지급	2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건강검진 지원	14
3.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수송시설 이용지원 ..	18
4. 고엽제후유증 3세대까지 역학조사 확대	23
※ 참고자료	28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5. 12. 10.
3. 회부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명시된 보상과 지원에 대한 상당 부분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수당 유족 승계 부재, 건강검진 및 수송시설 지원 근거 미비, 3세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적용받는 환자들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내용을 개정·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수당 지급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u>2세환자</u> 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 ----- ----- <u>2세환자</u> 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 ----- ----- -----

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 ⑦ (생략)

<신설>

⑧ (생략)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으로-----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③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유족 및 그-----

-----.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

-----사람(이하 “수당
지급 대상자”라 한다) 및 고엽
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

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

-----.
-----.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이-----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 현황>

(2026. 2월 말 기준, 단위: 명, 천원)

구 분	고도 장애	중증도 장애	경도 장애	합 계
수 당	1,296	954	626	-
인 원	9,335	8,430	28,396	46,161

*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8,878명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²⁾하여 상이등급에 따라 월 70만 8,000원에서 405만 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승계³⁾하고 있음(상이 7급 유공자 제외).

-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 ② ~ ④ (생략)
 -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 ② ~ ④ (생략)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이에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수당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미해당 시 본인에 대한 보상은 물론, 유족보상금 또한 지급되지 않으나, 개정안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둘째,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직무 수행 중 신체적 희생에 따라 유족이 제대로 부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으로 승계되고 있는 것인데,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입증⁴⁾된 고엽제후유증과 달리 고엽제후유의증은 질병이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임⁵⁾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4) 미국 연구 결과 및 국내외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의학적·과학적으로 규명된 질병으로, 국내 역학조사는 총 6회 실시되었음.

5) 1993년 현행법 제정 당시 고엽제와 질병 간의 상관성이 규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진료 혜택만이라도 주기 위하여 1984년 월남전 참전 미군과 고엽제제조회사 간의 소송에서 고엽제피해자들이 주장한 19개 질병(젠킨스보고서에 근거)을 중심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후 1996년부터 장애수준에 따른 수당 지급, 교육·취업지원 등으로 확대되었

- 셋째, 신체적 희생 없이 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과 신체적 희생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등급인 상이 7급에 대해서는 유족보상금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바, 타 수당 유족 지급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⁶⁾.
- 넷째, 국가보훈부 추산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5년간 3조 8,779억원(연평균 7,756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수당 지급 시 소요예산>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인원 발생	고엽제환자 사망인원(명)	3,558	3,852	4,170	4,514	4,887
소요 예산	A 연도별 유족 발생 인원 누계	49,572	53,424	57,594	62,108	66,995
	B 단가(천원)	1,002	1,052	1,105	1,160	1,218
	C 소요예산(백만원) A×B×12개월	596,054	674,425	763,696	864,543	979,199

* (고엽제환자 사망인원) '21~'23년 사망인원 평균증감률 8.3% 적용

* (단가) '26년 고엽제 중등도 수당(954천원) 연도별 5% 인상 적용

* (유족 인원) '26년 고엽제환자 사망인원(46,014명) + 연도별 고엽제환자 사망인원

자료: 국가보훈부

음(국가보훈처, 「보훈 60년사」, 2021. 8., pp.202~205)

6)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유족 승계와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체계 자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⁷⁾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 및 동법 제13조⁸⁾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와 비교하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와 형제자매⁹⁾까지 확대하고 있고, 지급 순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9)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는 미성년으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둘째,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이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면 적용 대상자인지 결정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등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인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 입법 시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을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규정에 추가하면서 제28조제1항을 개정하였는데, 그 결과 동 조 제3항¹¹⁾에 따라 뇌우침을 통한 재등록이 가능한 대상이 됨. 뇌우침을 통한 재등록은 본인에 한해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타 유족도 재등록 대상이 아닌 바, 유족이 재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3항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 ③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②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뇌우침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 ⑥ (생략)

을 받은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법 취지와 맞지 않고, 보상금 및 수당이 유족에게 지급되지 않는 다른 보훈대상자의 지급 요구로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건강검진 지원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 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11(건강검진 지원) ① 국 가보훈부 장관은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 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현행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장애 등급 판정자에게는 부상을 포함한 모든 질병에 대한 보훈·위탁병원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장애등급 미달자에게는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나¹²⁾, 건강검진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지원 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 조기 발견과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다만,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국민에게 무상¹³⁾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매년), 6대 암(위·대장·유방·자궁경부·간·폐암)에 대해서도 연령 등 고위험군 기준에 따라 암검진¹⁴⁾을 제공하고 있어 기본적인 검진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로 추가적 검진

정·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은 진료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4. 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 전액 부담(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가·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14) 암검진 종류·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등에 따라 비용 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일반 대상자의 경우 위·유방·간·폐암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수검자가 10% 부담하며, 대장·자궁경부암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함.

을 지원하는 현행 입법례¹⁵⁾¹⁶⁾는 통상 직업적 특수성 등으로 특정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와 같이 일반 건강검진 항목만으로는 건강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일반 검진 외의 특수 검진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질병 발생 위험의 특수성 및 의학적 개연성 등에

- 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약,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방사선 촬영, 골밀도 측정 등 건강검진 실시(「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분진, 소음, 야간 작업 등 소방활동에 의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폐기능검사, 고막운동성검사 등 건강검진 실시(「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교대·야간근무, 위험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 1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검진항목의 제공이 아닌 장애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건강검진 접근성(편의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부산대학교,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적용방안에 대한 기획연구」, 2024, P.30)

대한 객관적 근거가 선행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현재 보훈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은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의 진료 과정에서 혈액검사·영상검사 등을 통한 이상 소견에 대한 조기 발견 관리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수송시설 이용지원

- 개정안은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8조의8(수송시설의 이용지원)</u> ①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u> 1. <u>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u> 2. <u>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u> ② <u>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	---

- 현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 ·공상군경 등 상이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 수송시설의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¹⁷⁾ 요금을 감면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¹⁸⁾

<수송시설 이용지원 근거법률 및 감면대상>

근거 법률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전상군경 등과 상이등급 1급 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8) 고속열차는 한국철도공사와 (주)에스알과 협약, 시외·고속버스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수송시설 이용계약을 체결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임(또는 감면)금액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근거 법률	감면 대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특수임무부상자 및 상이등급 1급 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 포함) 및 상이등급 1급 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자료: 국가보훈부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 및 내용>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	감면률
열차(고속철 포함)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연 6회 무임 후 50% 감면
도시철도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무 임
버 스	시내버스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무 임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애국지사, 1~5급 상이국가유공자	시외버스 70% 감면, 농어촌버스 100% 감면
		6급 이하 상이국가유공자	30% 감면
	고속버스	애국지사, 1~5급 상이국가유공자	50% 감면
		6급 이하 상이국가유공자	30% 감면
내항 여객선 (연 6회/도서거주자 연 12회)		애국지사, 1~5급 상이국가유공자	무 임
		6급 이하 상이국가유공자	50% 감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7급은 상이국가유공자 1~5급, 8~14급은 상이국가유공자 6~7급에 준함

※ 애국지사, 1급 상이자는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상이등급이 없는 고엽제후유증환자¹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

19)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대상임.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법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모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수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유사한 조건이면서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이등급 기준 미달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참전유공자 등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가보훈부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하고 감면한 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연간 약 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바,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인 원	85,905	85,278	84,655	84,037	83,424	82,815
단 가(원)	90,100					
예상 추가 재정 소요	7,740	7,684	7,627	7,572	7,516	7,462

- 1) 최근 5년('20~'24 말) 국가유공자 연평균 감소(0.73%) 추계 반영
- 2) 90,100원 = 10,729백만원(2025년 예산) / 119,080명(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 2024년말 기준)
- 3) 후유증 등외자 12,448명 후유의증(등급자+등외자) 73,212명 후유증 2세환자(등급자+등외자) 245명('25.11월)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전·공상군경과의 형평성 및 공공기관 부담 가중²⁰⁾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대상을 개정안과 같이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0) 지하철 감면이용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없고(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지하철 무임승차비용 37억원 청구 소송 제기, '25년 7월), 고속열차의 경우 감면이용액 대비 보조금 지원이 부족함('25년 고속열차 감면이용액은 6,877백만원이나 보조금은 2,163백만원, 보조율 31.5%).

4. 고엽제후유증 3세대까지 역학조사 확대

- 개정안은 역학조사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u>사람</u> 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 ----- ----- <u>사람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자녀</u> ----- ----- ----- -----.
② · ③ (생략) <u><신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동 법 제정 이후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회의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2026년 현재 제7차 역학조사(2023년~2026년)가 진행 중임.

○ 고엽제 역학조사는 참전군인 본인의 질병 규명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2005년 언론, 국회 등에서 2세 역학조사 실시 필요성이 제기되어²¹⁾ 2007년 처음 2세 역학조사를 실시한 뒤, 제5차 역학조사부터 2세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음.

<고엽제 역학조사 현황>

구 분 (연구기간)	연구 기관	조사 대상	연구결과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1차 (’95.4.~’96.10.)	서울대	참전군인	버거병	뇌경색, 건성습진, 무혈성괴사증
2차 (’98.11.~’01.10.)	연세대	참전군인	-	-
3차 (’03.7.~’06.9.)	연세대	참전군인	만성골수성백혈병	-
4차 (’09.11.~’12.12.)	관동대	참전군인	-	-
5차 (’13.5.~’16.10.)	가톨릭 관동대	참전군인 · 2세	침샘암, 담낭암 (담도암 포함)	-
6차 (’19.1.~’21.12.)	가천대	참전군인 · 2세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
7차 (’23.5.~’26.5.)	가천대	참전군인 · 2세	역학조사 진행중	
2세 (’07.6.~’10.10.)	관동대	2세	추가 질병 없음	

※ 3세는 역학조사 미실시

자료: 국가보훈부

21) 2005년 7월 13일 MBC TV <뉴스추적>, 2005년 7월 20일 KBS 2TV <뉴스타임> 등의 프로그램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5년 11월 28일에는 국회에 2세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가 제출됨(국가보훈처, 「보훈 60년사」, 2021. 8., p.208).

□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고엽제 피해가 3세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례가 보도되었고²²⁾, 고엽제 3세 역학조사 및 질병 인정 요구 민원이 접수되고²³⁾ 있는 등 3세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고엽제 역학조사의 대상을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자녀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고엽제 노출의 유전적 영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하여, 2024년 국가보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관련 3세대에 대한 역학조사 계획을 마련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음²⁴⁾.

22) Jtbc news, “8살 민수네 가족에 찾아온 비극…끝나지 않는 ‘고엽제 3세’ 피해”, 2024.6.10.

23)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기간 : '23.6.~25.12.)

연번	신청경로	민원 내용	국가보훈부 답변
1	신문고	고엽제 3세(손자녀) 환자 보상 확대	미국 등 월남참전국에서 고엽제 3세 환자 질병을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향후 해외에서 3세 환자 질병 관련 유의미한 연구결과 등이 확인될 경우 역학조사 추진을 검토할 예정임
2	국민제안	고엽제 3세 질병 인정 요구	미국 등 월남참전국에서 고엽제 3세 환자 질병을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향후 해외에서 3세 환자 질병 관련 유의미한 연구결과 등이 확인될 경우 역학조사 추진을 검토할 예정임
3	국민제안	고엽제 3세 피해 관련 조사 필요	3세대 자녀에 대한 역학조사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하며, 우선 고엽제 유전독성 관련 전문기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임
4	신문고	고엽제 3세 질병 관련 조사 및 지원 확대 계획	고엽제 3세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실시 및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관련 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 노출과 질병 발생과의 상관성이 규명되어야 함. 현재 고엽제 독성의 유전 가능성 및 역학조사 필요성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음
5	신문고	고엽제 3세 역학조사 실시 요구	미국 등 월남 참전국에서 고엽제 3세 환자 질병을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국내 및 미국 등 해외에서 3세대 환자 질병과 관련한 유의미한 연구결과 등이 확인될 경우 역학조사 추진을 검토할 계획임

자료: 국가보훈부

□ 다만, 역학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과학적 개연성의 정도, 조사 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 장기적 재정 소요²⁵⁾ 및 행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사 필요성과 범위에 관한 객관적·의학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① 현재까지 고엽제 노출이 3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더라도 3세대 범위가 방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질병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며, ③ 후성유전 가능성²⁶⁾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역학조사 실효성 확보 가능성을 살펴본 뒤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전문가 자문결과 직접 유전 가능성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베트남, 미국 등 월남 참전국에서도 고엽제 3세 환자 질병을 인정한 사례 및 역학조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임.

24) 국회 정무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p.111

25) 국가보훈부는 3세대 유전가능성 및 역학조사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우선 진행 중이므로 3세 역학조사 예산추계 검토는 없었다는 설명임. 참고로, 2007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참전군인 2세(247,359명)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시 예산 4억 9,0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음.

26) 고엽제 노출이 DNA 염기서열 자체를 변화하진 않더라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여, 다음 세대에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개연성

- 또한, 고엽제 제7차 역학조사 대상 월남 참전자는 약 25만명으로 3세대 범위는 약 70만명으로 예상²⁷⁾되는데, 거주환경·직업 등 다양한 노출변수가 존재하여 특정 질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더라도 그 원인이 고엽제 노출이라 단정할 수 없어 역학조사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7

27) 개정안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역학조사를 추진하려면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후유증 3세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 1

고엽제 환자 보상·지원 현황

구 분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
보상금·수당	-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708~4,058천원 지급 * 7급은 유족 보상금 승계x	-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626~1,296천원 지급 ★ 유족 수당 승계(X)	-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1,440~2,308천원 지급 ★ 유족 수당 승계(X)
의료지원	- 본인 국비 진료, 배우자 감면(60%)	- 본인 국비 진료, 배우자 감면(x)	- 본인 국비 진료
취업/교육	- 가점 취업 -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좌 동	*고엽제후유증 자녀로 수혜가능
대부	- 주택·아파트·사업·생활안정 대부지원	- 대부 지원(X)	*고엽제후유증 자녀로 선순위 유족인 경우
수송시설	- 열차, 선박, 항공, 지하철 등 이용 지원	- 수송시설 지원(X)	좌 동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도 현황

구분		이 용 대 상	할인율	'24 지원예산 (백만원)		
공공기관	열차 (KTX·SRT 포함)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포함, 1~7급)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	2,163 (국고보조)		
	지 하 철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포함, 1~7급) * 보훈보상(지원공상) 비공공기관 수송시설인 민영노선(공항철도, 신분당선) 제외	무 임	-		
비공공기관	버 스	시내버스 *좌석·광역 (급행)·마을 버스 제외 농어촌버스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무 임	8,484 (국고보조)	
			시외버스	· 애국지사 · 1-5급 상이국가유공자 ·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70% 할인
		· 6-7급 상이국가유공자 ·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0% 할인		
		스	고속버스 * 포커스 고속 버스 제외	· 애국지사 · 1-5급 상이국가유공자 ·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할인
				· 6-7급 상이국가유공자 ·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0% 할인
		국내 여객선	· 애국지사 · 1-5급 상이국가유공자 ·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 임 육상거주자 : 연 6회 도서거주자 : 연 12회		82 (국고보조)
	· 6-7급 상이국가유공자 ·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할인 육상거주자 : 연 6회 도서거주자 : 연 12회			
	국내선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50% 할인	개별 업체 자체 지원		
		· 참전유공자 등 비상이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수권유족	30% 할인			
	국제여객선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20% 할인 * 한국 ↔ 중국 및 일본(한국 발권 승선권에 한함) * 일본노선의 경우 선사별 차이	개별 업체 자체 지원		

자료 : 국가보훈부